



Chapter 01 개정세법 및 세무조정 CHECK LIST



I 법인세관련 개정세법

1 법인세법

【법인세법 법인세분야】

1. 비영리 국제학교 교육서비스업의 비수익사업 포함 (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)

- 가. 개정취지 :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합리화
- 비영리 국제학교 간 형평성 제고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□ 비영리법인 비수익사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교육서비스업 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- 「초중등교육법」 등에 따른 학교 - 「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 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외국 교육기관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추 가〉</p>	□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범위 확대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padding: 0 10px; margin: 10px 0;"> (좌 동)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비영리국제학교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2.12.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

2. 합병·분할차익 자본전입시 의제배당금액 산정방법 개선(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)

가. 개정취지 : 적격 합병·분할 후 합병·분할차익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과세 제도 합리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□ 적격 합병·분할 후 합병·분할차익 자본 전입시 의제배당금액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합병차익 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의제배당대상 : 합병차익을 한도로 아래의 순서로 계산하여 ①, ④, ⑤에 해당하는 금액 ① 자산조정계정(시가-장부가액) ② 합병감자차익 ③ 피합병법인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 대상이 아닌 것 ④ 피합병법인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 대상인 것 ⑤ 피합병법인 이익잉여금 • 분할차익 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의제배당대상 : 분할차익을 한도로 아래의 순서로 계산하여 ①, ④, ⑤에 해당하는 금액 ① 자산조정계정(시가-장부가액) ② 분할감자차익 ③ 분할법인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 대상이 아닌 것 ④ 분할법인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 대상인 것 ⑤ 분할법인 이익잉여금 <p>□ 자본전입 순서 의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① → ② → ③ → ④ → ⑤ 	<p>□ 의제배당금액 산정방법 개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합병차익 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의제배당대상 : 아래 금액의 합계액 ① 자산조정계정(승계가액-장부가액) ② 피합병법인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 대상인 것 ③ 피합병법인 이익잉여금 • 분할차익 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의제배당대상 : 아래 금액의 합계액 ① 자산조정계정(승계가액-장부가액) ② 분할법인의 감자차손 <p>□ 자본전입 순서 의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의제배당대상 외 → 의제배당대상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2.12. 이후 합병·분할에 따라 승계한 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분부터 적용

3.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차등화(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의3)

가. 개정취지 :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확대 유도

나. 개정내용

종 전			개 정		
□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			□ 상장 자회사 지분율 30%~40% (비상장 50%~80%)구간 익금불산입률 조정		
자회사 지분율		익금 불산입률	자회사 지분율		익금 불산입률
상장	비상장		상장	비상장	
40%초과	80%초과	100%	40%초과	80%초과	100%
20~40%	40~80%	80%	30~40%	50~80%	90%
20%미만	40%미만	30%	20~30%	40~50%	80%
			20%미만	40%미만	30%
* 자회사 지분율 등에 따라 수입배당금의 일정 비율(익금불산입률) 익금불산입					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1.1. 이후 지급받는 수입배당금 분부터 적용

4.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차입금이자 차감 대상 주식 조정(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)

가. 개정취지 : 차입금을 통한 취득과 무관한 주식을 제외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 합리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	개 정	
□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차입금이자 차감		□ 차입금이자 차감 대상 주식 조정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익금불산입액 계산방법 : (수입배당금-차입금이자) × 익금불산입률 • 차입금이자 계산방법 : 지급이자 × (출자주식 적수/출자법인의 자산총액 적수)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좌 등) • 출자주식 적수 계산시 정부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주식 제외 	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2.12.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



5. 법인의 미술품 구입 손금한도 인상(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7호)

가. 개정취지 : 기업의 미술품 구입 지원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대상) 장식 등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 • (금액) 거래단위별 취득금액 500만원 이하 	<input type="checkbox"/> 손금산입 범위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좌 동) • 500만원 → 1,000만원 이하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2.12. 이후 미술품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

6.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손금산입 대상 확대(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0호)

가. 개정취지 : 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(내일채움공제)* 납입금에 대한 손금산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기업이 핵심인력으로 지정한 근로자가 5년간 재직시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 납입한 공제부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 • (대상) 중소기업 	<input type="checkbox"/> 손금산입 대상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견기업 포함* * 연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2.12. 이후 기여금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



7. 대손 사유에 재판상 화해 등 추가(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)

가. 개정취지 : 대손 사유 합리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□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한 채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, 미수금, 어음, 수표 등 • 채무자의 파산,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•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 가액 20만원 이하인 소액 채권 • 회생계획인가의 결정,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•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추 가〉</p>	<p>□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한 채권 범위 조정</p>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padding: 0 10px; margin: 10px 0;"> <p>(좌 동)</p> 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삭 제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*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* 「민사소송법」에 따른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, 「민사조정법」에 따른 강제조정결정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2.12. 이후 재판상 화해 등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

8. 적격 물적분할·현물출자시 감가상각 방법 개선(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)

가. 개정취지 : 구조조정을 세절감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□ 적격 물적분할·현물출자시 승계자산에 대한 분할신설법인·피출자법인의 감가상각 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분할·출자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감가상각 	<p>□ 감가상각 기준 변경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가 → 분할·출자법인의 장부가액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2.12. 이후 물적분할·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



9.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확대(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)

가. 개정취지 : 사회적기업의 기부 활성화 지원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□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정기부금 : (소득금액 - 법정기부금 손금인정액) × 10% <신 설>	□ 손금산입 한도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좌 동) - 사회적기업*이 지출한 지정기부금 : 10% → 20% * 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1.1.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10. 법정기부금 단체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비영리 국제학교 추가(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)

가. 개정취지 : 비영리 외국교육기관 간 형평성 제고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□ 법정기부금 단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시설비·교육비·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립학교, 평생교육시설 등 「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외국교육기관 <추 가>	□ 사후관리 예외사유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좌 동) 대상 단체 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국제학교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1.1.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

11.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(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)

가. 개정취지 : 기부 활성화 지원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□ 기부금의 손금산입·필요경비산입·세액공제* 한도</p> <p>* 15%(2천만원 초과분 30%) 세액공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법정기부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법인 : 소득금액 × 50% - 개인 : 소득금액 × 100% • 지정기부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법인 : (소득금액 - 법정기부금 인정금액) × 10% - 개인 : (소득금액 - 법정기부금 인정금액) × 30% • (이월공제기간) 한도초과액에 대해서는 5년 간 이월 	<p>□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 확대</p>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(좌 동)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5년 → 10년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1.1.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되, 2013.1.1.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

12.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지속 적용

(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,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·제136조)

가. 개정취지 : 중소기업의 영업활동 지원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□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근거) 조세특례제한법 • (기본금액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조특법 : 2,400만원 - 소득·법인세법 : 1,800만원 	<p>□ 손금불산입 특례 지속 적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법인세법으로 이관 • (기본금액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삭 제> - 1,800만원 → 2,400만원

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최저한세) 추가 인정되는 600만원에 대하여 적용 • (적용기한) 2018.12.31.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저한세 적용 제외 • 적용기한 폐지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 최저한세 적용 제외는 2019.1.1.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13. 무형자산 공동사용료에 대한 공동경비 처리기준 명확화(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)

가. 개정취지 :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신설법인의 무형자산 공동사용료 배분기준 합리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출자 공동사업자간 공동경비 배분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출자비율 □ 비출자 공동사업자간 공동경비 배분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비특수관계자간 : 공동사업자간 약정에 따른 비율* * 비율이 없는 경우 아래의 특수관계자간 비율 적용 • 특수관계자간 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원칙) 직전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·총자산가액 비율 중 선택 - (예외) 다른 기준 적용 가능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공동행사비 : 참석인원비율 ② 공동구매비 : 구매금액비율 ③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 :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기업회계상 자본합계액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공동경비 배분기준 보완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좌 동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③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 :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기준 기업회계상 자본합계액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공포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14. 유형자산 평가손실액의 손금귀속시기 개선 (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)

가. 개정취지 : 유형자산 평가손실의 손금귀속시기 합리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□ 자산의 감액 예외 사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원칙) 자산·부채의 감액 불인정 • (예외) 장부가액의 감액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재고자산으로서 파손·부패 등으로 정상 가격 판매 불가능 ②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·화재 등으로 파손 및 멸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파손·멸실이 발생한 사업 연도에 손금 산입 	<p>□ 유형자산 평가손실액 손금귀속시기 추가</p>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(좌 동)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파손·멸실이 발생한 사업연도 뿐만 아니라 확정된 사업연도에도 손금산입 가능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1.1. 이후 게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15. 합병교부주식 처분 순서 규정 개선 (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)

가. 개정취지 : 주식 처분에 대한 사후관리요건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납세자가 선택한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의제하여 합병 후 주식보유 의무 부담을 완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□ 적격합병 사후관리 요건 중 합병교부주식*에 대한 처분제한</p> <p>* 합병으로 교부받은 합병법인 주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주식보유 의무) 지배주주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합병교부주식의 1/2 이상 보유 의무 • (합병법인 주식 처분순서 의제) ①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합병교부주식 외 합병법인 주식 ② 합병교부주식* <p>* 복수의 합병을 한 경우 각 합병에 따른 합병 교부주식 간의 처분순서에 대한 규정 없음</p>	<p>□ 복수의 합병의 경우를 포함하여 합병법인 주식 처분순서 의제방식 개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좌 동) • 합병법인이 선택한 주식*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복수의 합병을 한 경우 각 합병에 따른 합병 교부주식, 합병교부주식 외 주식 등 모든 합병법인 주식

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2.12. 이후 주식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

16. 적격 분할시 주식 승계 요건 합리화(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)

가. 개정취지 : 분할존속법인의 원활한 사업 영위 지원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□ 적격 분할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아래의 경우만 주식 승계 가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분할신설법인의 사업 관련 주식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• 분할부분과 매출 or 매입 비중 30% 이상인 법인 주식 • 분할부분과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주식 등 • 지배 목적 주식*은 모두 승계(분할존속법인의 사업 관련 주식도 모두 승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지배주주로서 3년이상 보유 주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좌 등) • 지배 목적 주식이라도 분할존속법인의 사업 관련 주식은 승계하지 않을 수 있음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공포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

17. 포괄적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명확화(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항 제8호의2)

가. 개정취지 : 자본거래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범위에 자본거래로 인하여 이익을 분여하는 모든 법인이 포함되도록 규정 명확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□ 부당행위 계산유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제1호~제7호) 자산의 저가양도, 고가매입 등 손익거래유형 규정 • (제8호) 합병, 증자, 감자 등 자본거래유형 규정 • (제8호의2)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	<p>□ 부당행위 계산유형 명확화</p> <p>(좌 등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본거래로 인하여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



18. 감정평가사의 시가평가 기준 금액 요건 폐지(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)

가. 개정취지 :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 간 형평성 제고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부동산등의 감정가액을 산정·평가하는 감정기관 범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 - 다만 감정평가사의 경우 감정가액 5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지원대상 확대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 - <삭 제>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2.12. 이후 감정평가하는 분부터 적용

19. 영세중소기업의 중간예납 의무 면제(법인세법 제63조 제1항)

가. 개정취지 :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 면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립학교법인 • 산학협력단 • 국립서울대학 • 국립인천대학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중간예납 의무 면제 대상추가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(좌 동)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법인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1.1. 이후 게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

20.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의 가산세 전환 및 제재수준 조정 (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3호)

가. 개정취지 :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 합리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□ 현금영수증 발급의무* 위반 과태료</p> <p>* 의무발급업종 내국법인은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 등을 공급시 상대방 발급요청이 없어도 의무발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근거) 조세범처벌법 • (금액) 거래대금 × 50% • (중복배제)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* 적용 배제 <p>* 현금영수증을 발급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× 5%</p>	<p>□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화하고 제재수준 합리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이관 • 거래대금 × 20% • 가산세를 부과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적용 배제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1.1.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

21. 법인의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 신설 (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)

가. 개정취지 : 허위 지출증명서류 수취에 대한 제재 강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〈신 설〉</p>	<p>□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허위*로 현금영수증·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금액의 2% <p>*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현금영수증 등 수취한 경우</p>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1.1. 이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

22.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(법인세법 제76조의3 제1항)

가. 개정취지 : 일반법인과 과세 형평 제고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□ 이월결손금 공제한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일반법인) '19년부터 당해연도 소득의 60% ('18년은 70%) • (연결법인) 당해연도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80% • 한도적용 제외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소기업, 회생·경영정상화계획 등을 이행 중인 기업 	<p>□ 연결법인 공제한도 축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좌 등) • 80% → 60% • (좌 등)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23. 연결법인 간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 (법인세법 제76조의 14)

가. 개정취지 : 합병 후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제도 합리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□ 연결법인의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결모법인이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을 적격 합병한 경우 5년 이내 발생한 합병 전 보유자산 처분손실에 대하여 공제제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연결법인과 피합병법인 사업을 구분하여 각각 공제 • 공제제한 처분손실 범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자산 처분시 시가 - 장부가액) 	<p>□ 공제제한 범위 합리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좌 등) • 합병 후 시가하락에 의한 손실은 제외하도록 범위 합리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합병시 시가 - 장부가액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합병후 시가하락에 의한 손실(처분시 시가 - 합병시 시가)에 대해서는 기존 연결법인과 피합병법인 소득을 통산하여 공제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1.1.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

24.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 이연자산의 범위 합리화(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8)

가. 개정취지 :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 과세이연 대상 범위 합리화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□ 연결법인 간 자산 양도시 양도손익을 과세이연*</p> <p>* 향후 해당 자산 처분 등의 경우에 과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유형고정자산(건출물제외), 무형고정자산, 채권의 경우 - 건별 1억원(장부가액) 초과 자산에 한정 	<p>- 1억원 이하의 경우에도 양도손익 과세이연 적용 가능</p>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25. 연결법인별 최저한세 적용 규정 삭제(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3)

가. 개정취지 : 연결집단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최저한세 적용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□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 방법</p> <p>① 연결집단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최저한세 적용(法)</p> <p>② 연결세율 등을 각 연결법인별로 적용하여 연결법인별로 최저한세 계산*(令)</p> <p>* 연결법인별로 최저한세를 계산한 뒤 감면 배제되는 준비금을 연결집단별로 계산하는 경우 연결세율이 변동되므로 순환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</p>	<p>□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 방법 명확화</p> <p>① <좌 동></p> <p>② <삭 제></p>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26. 전자지급수단 영수증의 적격 지출증명서류 포함 (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)

가. 개정취지 :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상 직불·선불카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상 직불·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형평 제고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□ 법인세법상 적격 지출증명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용카드 매출전표 • 현금영수증 •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상 직불카드, 기명식 선불카드 영수증 < 추 가 >	□ 적격 지출증명서류 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좌 동) • (좌 동) • (좌 동) •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상 직불 전자지급수단, 기명식 선불 전자지급수단 영수증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2.12.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

【법인세법 국제조세분야】

1.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합리화(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)

가. 개정취지 : 파트너십 단체 등 법인성이 낮은 외국단체에 대해서는 그 실질에 따라 그 단체의 구성원(투자자)별로 과세되도록 외국법인 판정기준을 개선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□ 외국법인* 판정기준 <p>* 국외투자기구의 경우 거주지국에서 법인으로 취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'권리·의무 주체 기준'에 따라 대부분 외국법인에 해당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다음 중 하나 이상 충족시 외국법인에 해당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체 설립지국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경우 -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경우 	□ 외국법인의 범위 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권리·의무 주체 기준 삭제] (좌 동)



- 동종·유사한 국내 단체가 국내법에 따라 법인인 경우
-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, 소송 당사자가 되는 등 권리·의무 주체가 되는 경우

〈삭 제〉

※ 「2018년 세법개정안」 기 발표내용(2018.7.30.)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20.1.1. 부터 시행

2.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 명확화(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,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)

가. 개정취지 : 조세조약상 비과세·면제 및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의 신고오류 방지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(법인)세액* * 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추 가〉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조세조약 적용시 공제대상 세액 명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좌 동) •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·면제 및 제한세율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

3.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되는 직·간접비용의 개념 등 명확화(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,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)

가. 개정취지 :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관련 규정 명확화를 통한 과세 불확실성 해소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input type="checkbox"/>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Min(외국납부세액, 한도액*) 	<input type="checkbox"/> 직·간접비용의 개념 및 산정방법 등 명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좌 동)



* 한도 =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

$$\frac{\text{국외원천소득} - \text{직·간접비용}}{\text{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}} \\ (\text{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})$$

※ 직·간접비용의 개념, 산정방법 등은 미규정

〈추 가〉

〈추 가〉

〈추 가〉

□ 공제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

- (이월공제) 5년간 이월공제
- (배제) 직·간접비용 관련 금액은 이월공제 배제

- 국외원천소득*에서 차감되는 직·간접비용의 범위

*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시 비용 차감 후 국외원천소득(직·간접비용 차감 전 국외원천소득)

- 소득원천지국에서 국외원천소득 과세시 비용으로 차감되지 않은 관련 비용

- 직·간접비용의 개념

- (직접비용)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관련된 비용
- (간접비용) 국외원천소득과 그 외의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비용을 아래 산정방법으로 구분계산한 금액

- 간접비용의 산정방법

-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* 준용하여 안분계산

* (동일 업종)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
(다른 업종)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

□ 직·간접비용 관련세액의 이월공제 배제방법 명확화

- (좌 등)
- 직·간접비용의 차감에 따른 한도액 감소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이월공제 배제

4.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(법인세법 제91조)

가. 개정취지 : 내·외국법인 간 과세형평 제고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□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% 	<p>□ 공제 한도 축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80% → 60%



※ (2016년 세법개정) 내국법인의 공제 한도
조정 : 80% → (2018년 귀속) 70% → (2019
년 귀속) 60%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5. 비거주자·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외 대상 명확화

(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,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)

가. 개정취지 : 국내원천 기타소득에서 제외되는 파생상품 관련 규정 명확화를 통한 과세 불확실성 해소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□ 비거주자·외국법인(제조업, 해외펀드 등)의 국내원천 기타소득*에서 제외되는 파생상품의 범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장내파생상품 <p>〈추 가〉</p> <p>* 다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타 소득 : 자산 수증 소득, 국내 자산·사업 관련 손해배상금 및 경제적 이익 등(세율 20%)</p>	<p>□ 제외되는 파생상품 추가 및 명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좌 등) •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

6.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특례 규정 신설

(법인세법 제93조의2, 소득세법 제119조의2 신설)

가. 개정취지 : 실질투자자 기준으로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이 적용되도록 함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〈신 설〉</p>	<p>□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다음의 경우*는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간주 <p>* 법인이 아닌 국외투자기구(소득세법 적용)는 ②·③의 경우만 적용</p>



- 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 -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지국에서 해당 기구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
 -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설립한 것이 아닐 것
- ② 국외투자기구가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(일부만 입증하는 경우에는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한정)
 - 단,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 간주되더라도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(국외투자기구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의 혜택 적용 부인)
- ③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경우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20.1.1. 부터 시행

7.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되는 특정 활동 장소 요건 강화

(법인세법 제94조 제4항, 소득세법 제120조 제4항)

가. 개정취지 : 비거주자·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 확대*

* BEPS 프로젝트에 따른 OECD 모델조세조약 개정(2017년 11월)내용 반영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□ 비거주자·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되는 특정 활동 장소(국내사업장 예외 규정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소 • 비판매 목적 자산의 저장·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소 •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소 • 광고, 시장조사 등 예비적·보조적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소 • 광고, 시장조사 등 예비적·보조적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소 	<p>□ 예비적·보조적 성격의 사업활동 요건 추가</p>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padding: 0 10px; margin: 10px 0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단, 해당 장소에서 수행되는 활동이 예비적·보조적 성격을 가진 경우로 한정 </div> <p>• (좌 등)</p>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

8. 국내사업장 예외 남용 방지 규정 마련 (법인세법 제94조 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 제3항, 소득세법 제120조 제5항, 같은법 시행령 제180조 제2항)

가. 개정취지 : 비거주자·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 확대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〈신 설〉	<p>□ 국내사업장 예외 남용 방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특정 활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사업활동이 예비적·보조적 성격이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해당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 해당 비거주자·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인*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할 것 *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83조의2 제2호 및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31조 제2항의 특수관계 준용 - 특정 활동 장소의 활동이 해당 비거주자·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국내사업장의 사업 활동과 상호 보완적일 것 ② 비거주자·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각각의 특정 활동 장소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상호 보완적이며, 예비적·보조적 성격이 아닌 경우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weight: bold;">특수관계의 범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외국법인과 특수관계(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31조 제2항의 특수관계 준용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%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-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%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• 비거주자와의 특수관계(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83조의2 제2항의 특수관계 준용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거주자의 배우자·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-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%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</div>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9. 종속대리인의 범위 확대 및 종속대리인 판정시 적용되는 계약의 종류 명확화

(법인세법 제94조 제3항, 소득세법 제120조 제3항)

가. 개정취지 : 비거주자·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 확대

나.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<p>□ 종속대리인의 범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비거주자·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추 가〉</p>	<p>□ 종속대리인의 범위 확대</p> <p>(① 또는 ② 충족)</p> <p>① (좌 동)</p> <p>②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약 체결권한이 없는 대리인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것 - 비거주자·외국법인이 계약의 중요사항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할 것
<p>□ 종속대리인 판정시 적용되는 계약의 종류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 설〉</p> <p>※ 현재는 계약의 종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</p>	<p>□ 계약의 종류 명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비거주자·외국법인 명의의 계약 • 비거주자·외국법인 소유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사용권 허여 계약 • 비거주자·외국법인의 용역 제공을 위한 계약

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 : 2019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